

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6월 13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6월 13일

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제정시행('99. 9. 7)과 관련하여 종전의 “산림환경사업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”가 폐지됨에 따라
-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하는 임산물 및 임업종자시험·감정 등의 민원을 처리할 규정이 없으므로
- 본 민원처리를 위하여 새로운 제명의 조례로 제정코자 함

4. 주요 골자

- 임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임업시험·분석·감정 등의 업무중 임업용 종자, 묘목의 시험 및 감정과 토양분석·산림토양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
- 임산물·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함 (안 제1조)
-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신청 절차를 정함 (안 제2조)
-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서 검토결과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, 시험을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 및 감정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3조)
-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 위탁자에게 통지토록 함 (안 제5조)
- 위탁을 받아 시험한 종자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시험 및 감정의 결과에 대한 봉합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봉합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)
-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거나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수수료에 해당하는

금액을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함 (안 제8조)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9조)

5.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은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하는 임산물·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
-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
- 안 제7조 제2항의 “이 조례 제2조 제1항의 위탁신청서”는 “규칙에서 정하는 위탁신청서”로 수정해야 하며
- 안 제8조의 “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의 교부 수수료는”을 “시험 및 감정등을 위탁하거나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” 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